

#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군의회의결요청(안)

의안번호	529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.12.  
제출자 : 고성군수

## 1. 제안사유

- 1954년 개설된 배둔재래시장은 인근 개천, 구만, 회화, 마암면 주민들의 상업 활동중심기능역할을 현재까지하여 왔으나,
- 산업의 발달로 주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활성화가 되어야 함에도 기존 시장건물의 노후협소로 이용자감소 등 시장기능이 침체되고 있음.
- 따라서 배둔시장 현대화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결정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함.

## 2. 용도지역결정(변경) 조서

구		면적(m <sup>2</sup> 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합계		
합 계		710,000	-	710,000	100.0	
주거지역	일반주거지역	301,100	△3,400	297,700	41.9	
	준주거지역	-	3,400	3,400	0.5	
일반상업지역		29,500		29,500	4.2	
녹지지역	소 계	379,400	-	379,400	53.4	
	생산녹지지역	69,000	-	69,000	9.7	
	자연녹지지역	310,400	-	31,400	43.7	

## 3. 용도지역 변경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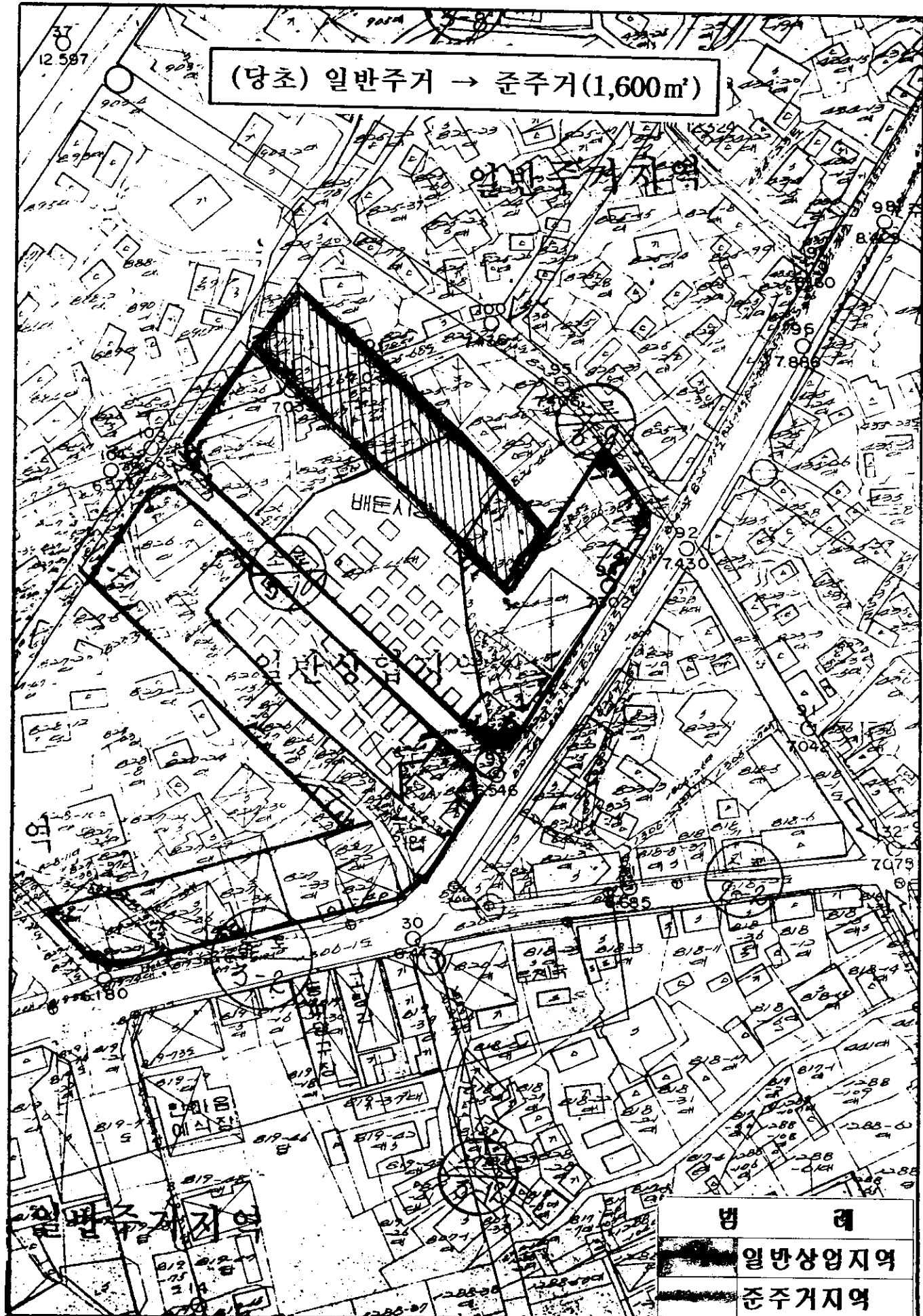
도면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(m <sup>2</sup> )	변경사유
		기정	변경		
1	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25-46번지일원	일반주거지역	준주거지역	3,400	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완충기능과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

## 4. 군의회 의견요청사항

- 배둔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수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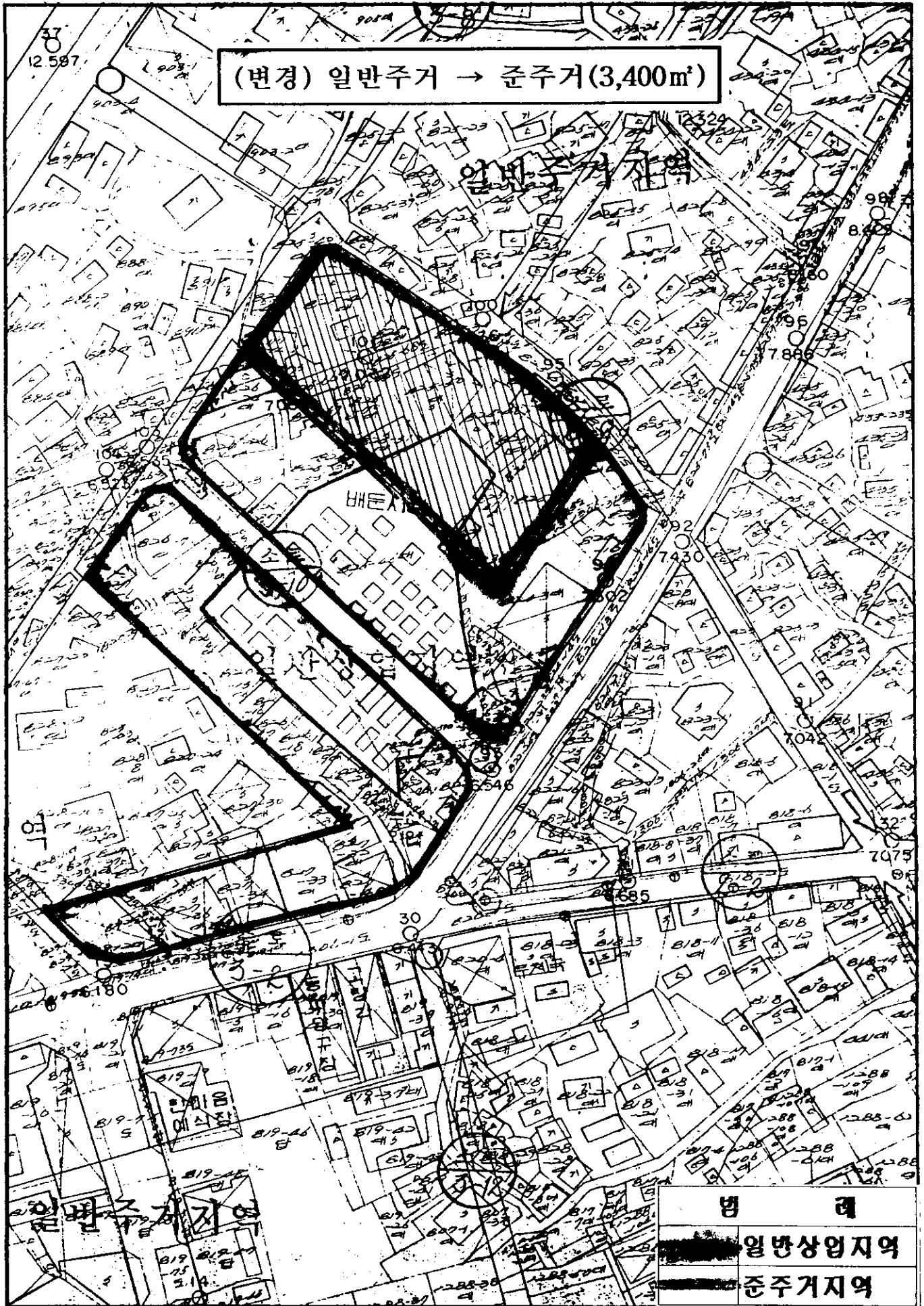
## 5. 당초 및 변경결정 도면(안) : 붙임

(당초) 일반주거 → 준주거(1,600m<sup>2</sup>)



범례	
	일반상업지역
	준주거지역

(변경) 일반주거 → 준주거(3,400m<sup>2</sup>)



범례	
	일반상업지역
	준주거지역